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1. . . (제 회)	

장사등에관한법률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제출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장례식장영업자로 하여금 이용자에게 계약체결 전에 계약의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고,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8331호, 2021. 7. 27. 공포, 2022. 1. 28. 시행)됨에 따라, 계약내용 설명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과징금의 분할 납부에 관한 일반적 근거가 규정되는 등의 내용으로 「행정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7979호, 2021. 3. 23. 공포, 2021. 9. 24. 시행)됨에 따라 과징금의 분할 납부를 금지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과태료의 부과기준(별표 7 제2호처목 신설)

장례식장영업자가 장례식장 이용자에게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이용자가 계약의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계약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2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그 기준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5항을 삭제한다.

별표 7 제2호처목부터 터목까지를 각각 커목부터 퍼목까지로 하고, 같은 호에 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호 커목(종전의 처목)의 위반행위란 중 “법 제29조제8항”을 “법 제29조제9항”으로 하고, 같은 목 근거법조문란 중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6”을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7”로 하며, 같은 호 터목(종전의 커목)의 근거법조문란 중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7”을 “법 제42조제1항제12호의8”로 한다.

(단위 : 만원)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처. 법 제29조제8항을 위반하여 계약체결 전에 계약내용 설 명을 하지 않은 경우	법 제42조제1항 제12호의6	150	200	250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7 제2호처목

부터 폐목까지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 ④ (생략) ⑤ 과징금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없다.	제39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 ④ (현행과 같음) <u><삭 제></u>

< 의안 소관 부서명 >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연 락 처	(044) 202 - 3473